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후조리원에서의 낙상 예방 조치 신설〉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47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 의견	2
------------------	---

I. 개요

1.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34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명구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17.

(3) 회 부 일 : 2025. 12.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영유아의 낙상 등 외상 발생 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평택의 신생아 낙상사고를 비롯해 여러 지역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바,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함.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를 추가하도록 하여 정부가 신생아 낙상 예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생아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2호라목 신설 등).

II. 검토 의견

-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포함하고,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의무와 사고 발생 시 이송 후 건강상태 확인 및 보고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4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u> 가. ~ 다. (생략)	2. <u>감염, 질병 및 낙상 등 안전사고를</u> ----- ----- -----
<u><신설></u>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설></u>	라. <u>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u>
	마. <u>그 밖에 임신부 및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u>
3. 임신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3. ----- -----

현행	개정안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생략) <신설> 5.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제4호에 따른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u>화재·누전이나 낙상</u>----- ----- ----- -----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3항1)에 따라 화재·누전이나 낙상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임산부나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통보받아 확인할 것</u> 5. ----- <u>이송 사실, 제4호에 따른 조치내역 및 제4호의2에 따라 통보받은 건강상태를</u>----- ----- ----- 제15조의8(시정명령)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3.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 키지 아니한 경우	3. -----제3호까지 및 제4호의2의-----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영유아 등의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낙상이나 화재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 중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2024년 기준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총 12건의 안전사고 중 11건이 낙상으로 인한 사고였음.

< 산후조리원에서 최근 일어난 영유아 등 안전사고 현황 >

	낙상	화재	기타	합계
2021년	5	1	-	6
2022년	2	3	1(누수)	6
2023년	5	1	1(머리 부딪힘)	7
2024년	11	-	1(산모 미끄러짐)	12
2025년(상반기)	1	-	1(열상)	2

자료: 보건복지부

1) 제3호의 오기로 보임

□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이나 질병 예방을 위하여 소독 등의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5조의4제2호),

개정안은 위 규정의 예방 목적에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추가하고, 나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와 그 밖에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제15조의4제2호 관련)>

	현행	개정안
목적	감염이나 질병 예방	(좌동) +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
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가. 소독 등의 환경관리 나.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다.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가. (좌동) 나. (좌동) 다. (좌동) 라.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 마. 그 밖에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 이러한 개정안은 낙상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로부터 신생아 보호를 강화하고 산후조리원 내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첫째,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임신부 및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바(안 제15조의4제2호마목) 범위가 불분명하여 수범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²⁾.
- 둘째,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에게 화재·누전이나 낙상 등의 안전 사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에 임신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임신부나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통보받아 확인하도록 하고(안 제15조의4제4호의2)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15조의8제3호), 건강 상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³⁾ 임신부나 보호자가 건강 상태를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산후조리업자에게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아가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셋째,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하위법령 정비 및 바닥재 교체 등 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도 현행법 제1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이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것으로 규정하는 반면, 개정안 각 호에서는 임산부 및 ‘신생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어 수정의 필요가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u>임산부 및 영유아</u> 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신설>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 ----- -----, 2. 마. 그 밖에 <u>임산부 및 신생아</u> 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4의2. 제3항에 따라 화재·누전이나 낙상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임산부나 <u>신생아</u> 의 건강 상태를 통보받아 확인할 것

- 한편, 산후조리원에서의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유사한 취지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제2203302호)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향후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신생아 안전 담보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 공감하나, 규제사항 및 법률 개정 효율성 등을 감안시 「모자보건법」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동 법률안 개정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제화하고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을 바람직 하지 않음. 또한, 의료기관의 경우 신생아 안전에 보다 더 많은 주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동 개정안과 같은 규제사항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인 산후조리원만을 대상으로 추가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신생아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 평가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500